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2 선고 2020가단28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움

담당변호사 이재현

3. D

변론 종결2021. 1. 12.

판결 선고2021. 2. 2.

주 문

1. 피고 B,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6,6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피고 B은 2020. 8. 14.까지, 피고 D은 2020. 12. 16.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는 피고 B, D과 공동하여 위 46,690,000원 중 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범죄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

나.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사안의 개요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가 사기범행 피해를 입었고 위 사기범행에 피고 C가 양도한 체크카드 1장이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원고의 청구는, 피고 C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파악된다.

나. 판단

1) 을나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역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알선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위와 같이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교부된 체크카드 수량이 1개에 불과하며, 피고 C가 위와 같은 양도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C가 그 명의의 체크카드를 양도할 당시 그것이 위 사기범행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범인에게 이를 교부하거나 금융계좌를 이용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2) 또한,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취인의 금융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경우에도 수취인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되지 않으면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7,600,000원을 송금함에 따라 피고 C가 위 돈 상당액의 이득을 취하였다고 보려면 피고 C가 위 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 실질적인 이득자가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C 명의의 위 예금계좌는 원고에 대한 사기범행의 주체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이체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국현

별지